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19,044,482	9,571,334
일반회계	272,846,986	8,185,410
특별회계	46,197,496	1,385,925
기타특별회계	46,197,496	1,385,92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99,711	44,991
수질개선특별회계	16,620,219	498,60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9,887	16,497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3,520,307	105,609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91,294	8,73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678,914	500,367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078,000	62,3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21,468	21,644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237,696	127,131

제 2 조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5,70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52,57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